

2025년도 자체평가계획

2025. 4.

재외동포청

I. 개 요

□ 2025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에 대하여는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업무의 성과와 정책품질, 국민 만족도를 제고
- 「핵심 민생과제」 선정 및 집중관리를 통한 국민 체감도 향상
 -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하되, 국정과제 연관성 및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 선정
 - 분기별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 민생현장 의견 수렴 계획 반영 및 운영실태 점검시 '현장의견 계획 이행' 여부 확인 및 평가 반영
 - 해당 과제는 자체평가시 추진 성과에 따라 가점 부여
- 제시된 목표와 달성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인사·조직·재정 등에 환류하는 등 성과와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연계

□ 수립 경과

- '25. 3. 4. 성과관리계획 작성 지침 배포
- '25. 3. 6. 성과관리계획(안) 및 자체평가계획(안) 수립 착수
- '25. 3. 31. 자체평가계획 의결·확정

II.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분 야	소위원회	해당부서
주요정책 평가	재외동포 정책 (1소위)	재외동포정책과 (소위 총괄)
		동포지원제도과
		미주유럽동포과
재정사업 평가	교류협력 (2소위)	아주러시아동포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재외동포협력총괄과 (소위 총괄)
행정관리역량 평가	예산·재정	동포교육문화지원과
		차세대동포과
		동포경제지원과
	인사·조직·정보화	대변인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
		혁신행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

정회욱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교수	교류협력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주요정책 (2소위)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사장	교류협력	·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교수	
이장섭 (소위원장)	전남대학교 JS글로벌한상연구원	원장	교류협력	· 전남대학교 글로벌아시아연구원 연구위원 · 재외동포정책실수위원회 위원	
한재필	송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교류협력	· 국회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 · 한국국제상학회 회장	
나미수	전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교류협력	· 전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인사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행정관리 역량
임준형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회장	조직	· 한국조직학회 회장	
박원재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	센터장	정보화	·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 ·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 자체평가위원 현황(총 15명)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분야	경 력	비 고
내부	오진희	기획조정실	기획조정관	재외동포 정책·교류협력	·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 중유럽과장, 영사서비스 과장 · 주프랑스대사관, 주튀니지대사관, 주독일대사관 근무	
외부	최종현 (전체 위원장 겸 소위원장)	(前) 외교부	대사	재외동포 정책	· 주네덜란드대사 · 외교부 의전장, 부대변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주요정책 (1소위)
	임영언	재외한인학회	회장	재외동포 정책	· 재외한인학회 회장 · 조선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조동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재외동포 정책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교수 · 한반도평화연구원 제5대 원장	
	이현서	화우공익재단	변호사	재외동포 정책	· 화우공익재단 변호사 · 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사와동행 변호사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재외동포 정책	·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소장 · 민주평통 국제분과 상임위원	
	주지예	성균관대 인문사회융합인재 양성사업단	연구원	재외동포 정책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기반시설위원회 총괄분과 위원장 · 한국행정학회 공공기관혁신 특별위원회의 위원	

※ 분야별 전문가 비율(명)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교수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기타	소계	기획조정관
6 (42.9%)	1 (7.1%)	-	1 (7.1%)	-	6 (42.9%)	14 (100%)	1

※ 기타 : 前 고위외무공무원, 재외한인학회 회장,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한국조직학회 회장
전남대학교 글로벌한상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 센터장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 운영 방안

○ 운영세칙

-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재외동포청 훈령 제12호)

○ 의사결정(대면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운영

- (전체위원회) 성과관리전략·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자체평가 결과 등 주요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소위원회의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 (소위원회) 평가대상과제의 계획 및 성과지표 검토 및 의견 제공, 이행상황 및 개선·보안사항 점검, 1차 평가 실시

< 소위원회 구성 >

구 분	분 야	위원장	위 원
1소위	재외동포정책	최종현 (전체 위원장 겸임)	오진희, 김성수, 임영언, 조동준, 주지예, 이현서
2소위	교류협력	이장섭	오진희, 이해영, 한재필, 나미수, 정희욱
행정관리역량	조직, 인사, 정보화	-	문명재, 임준형, 박원재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의 구성

○ 평가지원팀별 임무 및 역할

역 할	평가지원팀	팀원(직책)	연락처
평가 총괄지원	평가지원 총괄팀 (혁신행정담당관실)	조창연 혁신행정담당관	032-585-3141
		유대원 주무관	032-585-3150
주요정책 소위 운영지원	[1소위 평가지원팀]		
	재외동포정책과	장현석 주무관	032-585-3157
	동포지원제도과	김은정 주무관	032-585-3181
	미주유럽동포과	윤기호 주무관	032-585-3166
	아주러시아동포과	권오성 사무관	032-585-3288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임대성 사무관	02-6399-7162
	[2소위 평가지원팀]		
	재외동포협력총괄과	유가은 사무관	032-585-3197
	동포교육문화지원과	박정환 사무관	032-585-3209
	차세대동포과	변승우 주무관	032-585-3216
	동포경제지원과	오은아 사무관	032-585-3223
	대변인실	박한울 사무관	032-585-3246

□ 평가지원팀의 운영

- (평가지원 총괄팀)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자체평가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총괄 및 소위별 평가 관련 자료 취합 △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활용 지원 △ 관리과제별 담당자 교육 및 설명회 실시 △ 전체위원회 회의 운영 등
- (소위별 운영지원팀) △ 각 소위 평가 관련 자료 취합·제출 △ 평가지원 총괄팀과 각 관리과제 담당자와의 업무 협조 △ 각 소위 자체평가위원과의 회의 운영 등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 부문

□ 평가 대상 : 총 10개 과, 11개 관리과제

< 평가대상 세부현황 >

담당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25년 목표치	측정 방법 (측정 산식)
재외동포정책과	1-1-①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정책 강화지수	74	총 건수 = ① + ② + ③ + ④ + ⑤ (차관급 이상 참석시 2의 가중치 부여) ① 재외동포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실적 건수 ② 재외동포정책관련 유관부처·기관 협의 건수 ③ 재외동포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건수 ④ 재외동포정책 홍보 및 인식제고를 위한 아웃리치 (홍보 동영상 배포 등) 건수 ⑤ 재외동포정책 연구용역 결과 평가 건수
아주러시아 동포과	1-1-② 역사적 특수 동포 및 소외동포 대 상 보호·지원 강화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동포 맞춤형 정책 추진 건수	40	총 건수 = ① + ② ① 현장 소통을 통한 정책 수요 파악 건수 - 국내·외(온라인 포함) 초정 간담회, 행사, 면담, 업무협의 등 건수 ② 대상별 맞춤형 정책 추진 건수 - 대상별 특수 사안 (특이동향, 사할린동포, 고려인동포, 다문화취약동포 등) 검토 및 대응 건수
미주유럽 동포과	1-1-③ 지역별 동포 맞춤형 정책 강화	지역별 동포 맞춤형 정책 추진 건수	180	총 건수 = ① + ② ① 현장 소통을 통한 정책 수요 파악 건수 - 국내·외(온라인 포함) 행사, 사업, 자원 협의 건수, 대 통량 총리 주최 동포간담회, 업무협의 개최 건수 등 ② 지역 맞춤형 정책 활동 건수 - 파트나십 사업 지원 건수 등 - 정책 콘텐츠 기획 건수 - 콘텐츠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건수
동포지원제도와	1-1-④ 국내 체류 동 포 정착지원 강화	국내 동포 정책 추진 건수	25	총 건수 = ① + ② ① 보조금 사업 건수(사자제 10, 민간 8)·현장소통을 통한 정책수요 파악(5건) 건수 ②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1건), 자자체 등 보급(1건)

담당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25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1-2-① 제도 개선을 통한 동포 편의 증진	재외동포 지원 및 영사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 추진 건수	8	· 아래 ①, ②, ③, ④을 합산 ① 제도 정비·개선 관련 연구용역 수행, 제 도 조사 실시, 유관기관 협의 등 건수(*0.5) ② 제도 정비·개선 추진계획 등 내부재가 건 수(*0.5) ③ 입법예고·관계기관 의견조회 또는 고시·공 포 건수(*1) ④ 보도자료·업무편람·대국민 안내 홍보물 등 제작·배포 등 홍보 건수(*1)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1-2-② 채감할 수 있는 재외동포 민원서비스 개선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이용 건수	100,082	·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 이용건수 - 측정 대상기간 : '25.1.1.~'25.12.31. - 실적적 집계완료 시점 : '25.12월 중순 예정 - 측정 수행기관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이용건수												
		통합민원실 민원서비스 이용 만족도	4.6	· 통합민원실 이용 민원인 대상 분야별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측정 대상기간 : '25.9.1.~11.30. - 결과 정리 시점 : '25.12월 말 예정												
재외동포협력총괄과	Ⅱ-1-① 전세계 동포 단체 활성화를 통한 한인 네트워크 구축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 만족도 점수	90	· 리커트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대부분 '매우 만족'으로 답변한 경우 달성 가능												
		정부 주요 정책에 부합하는 재외동포단체 활동 지원	70	· [(정부 주요 정책에 부합하는 재외동포단체 활동(A) 지원 건수 / 지원 신청 건수) x 0.8] + (A에 대한 공판 평가)* * 공판평가 점수 평균 환산 기준 (공판평가 점수: 상3, 중2, 하1) <table><tr><td>평균</td><td>점수환산</td></tr><tr><td>2.5~3</td><td>0.2</td></tr><tr><td>2~2.49</td><td>0.15</td></tr><tr><td>1.5~1.99</td><td>0.1</td></tr><tr><td>1.0~1.49</td><td>0.05</td></tr><tr><td>1.0미만</td><td>0</td></tr></table>	평균	점수환산	2.5~3	0.2	2~2.49	0.15	1.5~1.99	0.1	1.0~1.49	0.05	1.0미만	0
		평균	점수환산													
2.5~3	0.2															
2~2.49	0.15															
1.5~1.99	0.1															
1.0~1.49	0.05															
1.0미만	0															
재외동포단체 의견 수렴 간담회 건수	12	· 전년도 재외동포단체 의견 수렴 간담회 건 수 보다 약 10% 향상														
차세대동포과	Ⅱ-1-② 차세대·입양 동포 지원으로 모국 과의 유대감 제고	차세대 및 입양동포 대상 주요 대회 참가자 만족도	91.2	차세대·입양동포를 모국으로 초청하는 2개 주요 행사* 참가자의 만족도 점수 평균 *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차세대 및 입양동포 네트워크 활성화 제고	30	차세대·입양 동포 대상 연간 네트워킹 행사 및 회의* 횟수 합계 *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재외동포 장학사업 관련 국내·현												

담당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25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지·온오프라인 회의 등
동포경제지원과	II-1-③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구축으로 재외동포와 모국간 교류협력 강화	동포경제인네트워크 활용사업 만족도	83.9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만족도 점수*0.78+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사업 만족도 점수*0.22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지수	77.5	OK Biz 25년 사업 참여자 점수 + OK Biz 자문단 활용 사업 점수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자 수	90	개최지 인구대비 대회 참가자 비율
동포교육문화지원과	II-2-① 교육 및 문화 지원을 통해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가 교사의 정체성 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정도	86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연수 참여자 설문조사 중 관련 문항 답변)
		스터디코리안 만족도	80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시스템 이용자 설문조사 중 관련 문항 답변)
대변인실	II-2-② 재외동포 및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소통 강화	보도성과	620	연간 보도자료 보도건수(뉴스스크랩 자료 분석)
		언론 취재 현장 지원 및 촬영 지원	43	연간 언론 취재 현장 지원 및 촬영 지원 건수

□ 평가 제외

- 기획조정관실, 운영지원과
 - 행정지원 업무 수행 부서로 독자적 지표 설정이 곤란하여 평가 제외

2. 재정사업 부문

- 재외동포청 전체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3. 행정관리역량 부문

- 조직, 인사, 정보화 3개 영역별 기관 내부 관리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에 대하여 평가

IV.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 부문

- **평가기준을 계획(20점), 시행(20점), 결과(60점) 단계로 구분**
 - '24년 자체평가 시 신설 부처로 자체평가 실태점검 제외, 실제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첫 해로서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획단계와 시행단계의 평가비중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결과단계 중 성과지표 외 정책성과 평가를 위한 정책효과성(30점) 지표를 운영하여 정책성과 및 효과 중심의 평가 체계 구축
- **핵심 민생과제, 부처간 협업과제 등 연계 가점 제도 운영**
 - 핵심 민생과제 및 부처간 협업과제 추진 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 국정과제·정부과제 기여 및 정부업무평가 기여도 가점 부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방법(측정기준)	배점
계획단계 (20)	계획수립의 적절성	▶ 전략·성과목표와 연계성, 관리과제 추진계획의 구체성 정성평가	15
	계획단계 소통·환류	▶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자체평가위원 등의 의견 반영 여부 정성평가	5
시행단계 (20)	정책추진 노력	▶ 추진계획 대비 세부일정 준수율 정량평가	5
	중간단계 환류	▶ 상반기 자체평가위원 점검결과 검토의견 및 미흡사항 개선 여부 정성평가	5
	변화 대응성	▶ 상황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현장의견 수렴·정책반영 관련 노력 등 정성평가	10
결과단계 (60)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의 대표성(상/중/하) 정성평가(최대 12점 차이)	30
		▶ 목표치의 적극성(상/중/하) 정성평가(최대 6점 차이)	
	정책효과성	▶ 당초 의도한 효과 발생정도 정성평가 ▶ 부수적 효과 정성평가 ▶ 향후 기대효과 정성평가	30
가점		▶ 정부과제 등 연계, 핵심민생과제, 협업과제, 분량기한 준수 등	+6
계			100(+6)

2. 재정사업 부문 / 행정관리역량 부문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지침 및 행정안전부 행정관리역량 평가지침에 따라 별도 시행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총괄)

V.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 평가 절차

- (소위원회) 관리과제별 제출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소관 과제에 원점수 부여
- (평가지원 총괄팀)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 및 핵심민생과제·협업과제·국정과제와의 연계 가점을 부여하여 전체 순위 도출
- (전체위원회) 평가 결과 확정

□ 평가 결과 상대 등급화

- 평가 결과를 7개 등급으로 구분
 - 최상위 및 최하위 한 개 등급을 제외한 평가등급의 기준선을 5% 범위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다는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관리과제 11개를 7개 등급으로 구분

< 평가등급 분포 기준 >

순위 누적 %*	등급	해당 과제 수 (누적)
10% 이내 (최상위)	S	1(1)
10% 초과 ~ 20% 이내	A+	2(3)
20% 초과 ~ 40% 이내	A	2(5)
40% 초과 ~ 70% 이내	B+	3(8)
70% 초과 ~ 80% 이내	B	1(9)
80% 초과 ~ 90% 이내	C+	1(10)
90% 초과 (최하위)	C	1(11)

* 순위 누적(%) =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결과공개) 관리과제의 지표별 평가점수를 과제 소관부서에 개별 공개
- (이의신청 대상)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평정근거와 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이에 대한 객관적·실증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최대 2개 지표)

< 유의사항 >

- 기 제출한 실적보고서 내용을 반복하거나 보완할 수 없음
 - 다만 평가위원이 실적자료 추가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한 경우 보완가능
 - ※ 평가 지표별 실적 또는 입증자료 추가제출 및 실적서 오류 수정 등은 기존 실적서 보완임을 표시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송부 예정
- 신청이 가능한 경우 <예시>
 - 평정근거와 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정근거 : 목표를 적절하게 달성하였음, 점수 : 15점/30점), 70% 이하 점수에 대해 평정근거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

- (심의방법) 소위별 심의 (대면 또는 서면)
 - 평가지표별로 위원 50% 이상이 점수변경 의견인 경우, 위원별 재평가 점수 반영
 - 점수상향 한도를 두지 않으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 하향도 가능

□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평가 결과보고서에 △과제의 효과 진단 △성과 부진 원인 분석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등 제시

□ 평가결과 공개

- 결과보고서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통해 국조실에 제출하고 정부업무평가 의결 즉시 홈페이지 공개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주관부서)	주요논의 사항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25.3월 (혁신행정담당관실 및 각 소위)	- (과·팀) 성과관리계획 수립 - (소위원회) 계획 검토 및 의견 제시 - (전체위원회) 계획 심의·의결
상반기 점검	'25.6-7월 (각 소위)	- (과·팀) 상반기 이행실적 작성 - (소위원회) 실적 검토 및 의견 제시
성과관리계획 수정	'25.7-8월 (각 소위)	- (과·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 - (소위원회) 수정 계획 검토 및 의견 제시 - (전체위원회) 수정 계획 심의·의결
하반기 평가	'25.12월-'26.1월 (혁신행정담당관실 및 각 소위)	- (과·팀) 실적보고서 제출 - (소위원회) 실적보고서 1차 평가 - (평가지원 총괄팀) 평가 결과 검토 - (전체위원회) 평가 결과 확정

VI.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성과주의 문화정착 및 조직 전체의 성과향상 도모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 (정책) 부진한 과제는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보완사항을 마련하고, 차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활용하여 정책개선 유도
- ☐ (예산)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를 예산안 편성 등에 반영
- ☐ (조직/인사/정보화) 행정관리역량 평가결과 우수사례를 타부처와 공유하고, 미흡한 분야는 분석해 행정제도 개선 및 기관역량 강화에 활용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 (인사 및 성과급) 인사등급 및 성과급 지급을 결정하는 직원 성과평가지 자체평가 결과를 일정 비율 반영

* (국조실 지침) 자체평가 결과의 개인 성과급 반영비율을 최소 30%로 설정 권고 및 그 외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환류를 강화

- ☐ (포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 검토

4. 평가결과 확산·환류 방안

- ☐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및 청 내 사례공유
- ☐ 전년도 부진과제(평가 등급 누적 순위 80% 초과 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실행계획 등 개선계획을 마련 → 반기별 이행상황 점검
- 필요시 외부 전문가 컨설팅 혹은 연구용역 의뢰

VII.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 평가위원회에 대한 지원
 - 평가위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 사례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 ☐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 (내부) '26년 1월 자체평가 결과 확정 후 각 관리과제별 소관부서에 해당 과제의 등급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의견 통보
 - (외부) 국무조정실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2025년 주요정책 자체평가 세부지표(안)													
평가항목		1. 계획단계 (20점)													
평정방법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15점)														
	- 전략·성과목표와 연계성, 관리과제 추진계획의 구체성 정성평가														
		<table><tr><th>구 분</th><th>매우우수</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매우미흡</th></tr><tr><td>점 수</td><td>15</td><td>12</td><td>9</td><td>6</td><td>3</td></tr></table>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15	12	9	6	3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15	12	9	6	3										
평정방법	② 계획단계 소통·환류(5점)														
	-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자체평가위원 등의 의견 반영 여부 정성평가														
		<table><tr><th>구 분</th><th>매우우수</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매우미흡</th></tr><tr><td>점 수</td><td>5</td><td>4</td><td>3</td><td>2</td><td>1</td></tr></table>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5	4	3	2	1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5	4	3	2	1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15점)														
	- 전략·성과목표와 관리과제 간 연계성·체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추진계획이 과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													
		- 과제추진계획의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측정기준 (착안사항)	② 계획단계 소통·환류(5점)														
	- 성과관리 시행계획(안) 수립 시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 20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안)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검토 의견을 최종계획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평가근거/ 자료	○ 20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항목	2. 시행단계 (20점)																																				
평정방법	① 정책추진 노력(5점) - 관리과제 추진계획 대비 세부일정 준수율에 따라 정량평가 <table> <tr> <th>구 분</th><th>100%</th><th>100%미만 ~90%이상</th><th>90%미만 ~80%이상</th><th>80%미만 ~70%이상</th><th>70% 미만</th></tr> <tr> <th>점 수</th><td>5</td><td>4</td><td>3</td><td>2</td><td>1</td></tr> </table> ② 중간단계 환류(5점) - 상반기 자체평가위원 점검결과 검토의견 반영 및 미흡사항 개선 여부 정성평가 <table> <tr> <th>구 분</th><th>매우우수</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매우미흡</th></tr> <tr> <th>점 수</th><td>5</td><td>4</td><td>3</td><td>2</td><td>1</td></tr> </table> ③ 변화 대응성(10점) - 상황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현장의견 수렴 노력 등 정성평가 <table> <tr> <th>구 분</th><th>매우우수</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매우미흡</th></tr> <tr> <th>점 수</th><td>10</td><td>8</td><td>6</td><td>4</td><td>2</td></tr> </table>	구 분	100%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 미만	점 수	5	4	3	2	1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5	4	3	2	1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10	8	6	4	2
구 분	100%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 미만																																
점 수	5	4	3	2	1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5	4	3	2	1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10	8	6	4	2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정책추진 노력(5점) - 관리과제의 세부일정을 적기 완료 또는 조기 완료한 경우 '일정준수'로 판단 - 단, 일정지연이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일정준수'로 판단 * 사회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최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으로 인한 지연 등 - 일정 준수율이 100% 미만인 경우라도 12월말 기준으로 지연되었던 사항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는 2점 가점 부여(가점 포함 최대 5점) ② 중간단계 환류(5점) - 상반기 점검결과 발견된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 여부 - 상반기 점검시 자체평가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 반영 여부 ③ 변화 대응성(10점) - 상황변화에 대응한 기관·부서·공관과 협업 노력, 비대면 협의 활용 정도 - 과제추진 과정에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수행 여부 *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의 온·오프라인 활동, 재외공관·관계기관·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조사 여부 -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결과,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히 대처하였는지 여부 * 단, 모니터링 결과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근거/ 자료	○ 2025년 관리과제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부서별 제출자료)																																				

평가항목	3. 결과단계 (60점)																																																								
평정방법	① 목표치의 달성도·적극성 및 성과지표의 대표성(30점) - 목표치의 달성도 및 적극성에 따라 7단계로 등급 구분 <table> <tr> <th>달성도 적극성</th><th>초과달성</th><th>달성</th><th>거의달성</th><th>일부달성</th><th>미달성</th></tr> <tr> <td>상</td><td>SS</td><td>S</td><td>A</td><td>B</td><td>C</td></tr> <tr> <td>중</td><td>S</td><td>A</td><td>B</td><td>C</td><td>D</td></tr> <tr> <td>하</td><td>A</td><td>B</td><td>C</td><td>D</td><td>E</td></tr> </table> - 성과지표의 대표성에 따라 등급별 점수 부여 (최대 12점 차이) <table> <tr> <th>등급 대표성</th><th>SS</th><th>S</th><th>A</th><th>B</th><th>C</th><th>D</th><th>E</th></tr> <tr> <td>상</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d>15</td><td>12</td></tr> <tr> <td>중</td><td>24</td><td>21</td><td>18</td><td>15</td><td>12</td><td>9</td><td>6</td></tr> <tr> <td>하</td><td>18</td><td>15</td><td>12</td><td>9</td><td>6</td><td>3</td><td>0</td></tr> </table> ※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가중치에 따른 평균값으로 등급결정	달성도 적극성	초과달성	달성	거의달성	일부달성	미달성	상	SS	S	A	B	C	중	S	A	B	C	D	하	A	B	C	D	E	등급 대표성	SS	S	A	B	C	D	E	상	30	27	24	21	18	15	12	중	24	21	18	15	12	9	6	하	18	15	12	9	6	3	0
달성도 적극성	초과달성	달성	거의달성	일부달성	미달성																																																				
상	SS	S	A	B	C																																																				
중	S	A	B	C	D																																																				
하	A	B	C	D	E																																																				
등급 대표성	SS	S	A	B	C	D	E																																																		
상	30	27	24	21	18	15	12																																																		
중	24	21	18	15	12	9	6																																																		
하	18	15	12	9	6	3	0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목표치의 달성도·적극성 및 성과지표의 대표성(30점) -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여부 판단기준 <table> <tr> <th>구 분</th><th>판단기준</th></tr> <tr> <td>초과달성</td><td>일반적인 기대수준을 초과하여 달성(목표치 130% 이상)</td></tr> <tr> <td>달성</td><td>목표치를 달성했거나 약간 초과(목표치 100%~130% 달성)</td></tr> <tr> <td>거의달성</td><td>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거의 근접(목표치 90% 이상 달성)</td></tr> <tr> <td>일부달성</td><td>어느 정도 실적이 있으나, 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한 경우(목표치 60%~90% 달성)</td></tr> <tr> <td>미달성</td><td>위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성과지표 달성이 저조한 경우</td></tr> </table> - (적극성) 성과지표 목표치가 과거 실적 추이,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한 통상적 기대 수준을 상회·미달하는지 여부 (상/중/하) - (대표성) 설정된 성과지표가 해당 관리과제 추진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목표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상/중/하) * 성과지표의 대표성, 목표치의 적극성 세부 판단기준은 <참고> 활용	구 분	판단기준	초과달성	일반적인 기대수준을 초과하여 달성(목표치 130% 이상)	달성	목표치를 달성했거나 약간 초과(목표치 100%~130% 달성)	거의달성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거의 근접(목표치 90% 이상 달성)	일부달성	어느 정도 실적이 있으나, 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한 경우(목표치 60%~90% 달성)	미달성	위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성과지표 달성이 저조한 경우																																												
구 분	판단기준																																																								
초과달성	일반적인 기대수준을 초과하여 달성(목표치 130% 이상)																																																								
달성	목표치를 달성했거나 약간 초과(목표치 100%~130% 달성)																																																								
거의달성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거의 근접(목표치 90% 이상 달성)																																																								
일부달성	어느 정도 실적이 있으나, 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한 경우(목표치 60%~90% 달성)																																																								
미달성	위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성과지표 달성이 저조한 경우																																																								
평가근거/ 자료	○ 2025년 관리과제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부서별 제출자료)																																																								

평정방법	② 정책효과성(30점) - 당초 의도한 효과 발생정도 정성평가(20점)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매우우수</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매우미흡</th></tr> <tr> <td>점 수</td><td>20</td><td>16</td><td>12</td><td>8</td><td>4</td></tr> </table>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20	16	12	8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20	16	12	8	4							
	- 부수적 효과 및 향후 기대효과 정성평가(10점)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매우우수</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매우미흡</th></tr> <tr> <td>점 수</td><td>10</td><td>8</td><td>6</td><td>4</td><td>2</td></tr> </table>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10	8	6	4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10	8	6	4	2							

측정기준 (착안사항)	② 정책효과성(30점) - (당초 의도한 효과) 추진계획의 제시된 기대효과의 실제 발생여부 * 정책실행 자체가 아니라 ①실행된 제도나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는지, ②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통계 등 계량수치, 사례, 국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부수적 효과) 당초 계획(의도)한 정책효과 이외에 발생한 성과 및 효과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발생여부 * 국정과제, 정부혁신, 협업과제, 적극행정 등에 대한 기여도 및 공식적인 대회 입상 및 수상·인증 등의 성과 고려 - (향후 기대효과) 향후 또는 장기적으로 과제가 목표한 효과가 발생하거나 지속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평가근거/ 자료	○ 2025년 관리과제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부서별 제출자료)
-------------	-------------------------------------

※ (가점) ①정부과제 등 기여(3점) ②핵심 민생과제(1점) ③부처간 협업과제(1점) ④분량·기한준수(1점)

구 분	채점 기준
①정부과제 등 기여(3점)	-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연계 과제 : △1개 0.5점 △2개 1점 -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 주무과** : 0.5점(자료제출 기한 등 협조 시) - 정부업무평가 관련 과제(주요정책, 정부혁신, 규제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발굴, 타부처 협업, 자료제출 등 협력 요청에 대한 기여도 : △상 1.5점 △중 0.5점 △하 0점
②핵심 민생과제(1점)	핵심 민생과제 추진 성과 : △우수 1점 △보통 0.5점 △미흡 0점
③협업과제(1점)	부처간 협업과제 : △우수 1점 △보통 0.5점 △미흡 0점
④분량·기한준수(1점)	△분량·기한 준수 1점 △분량·기한 중 1개 준수 0.5점 △분량·기한 미준수 0점

* 1개 과제를 여러부서 담당시 점수 배분

** 국정과제별 주무과 및 자체평가 소위 주무과에 가점 0.5점 부여, 여러 부서 담당 시 점수 배분

참고

성과지표의 대표성, 목표치의 적극성 평가기준

※ 평가위원은 아래 기준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의 대표성, 목표치의 적극성 평가

□ 성과지표의 대표성(상/중/하) 판단기준

- ① 복합지표가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지표(1~2개)로 구성
 - ② 과제의 직접적 내용이 아닌, 과제의 핵심내용을 반영
 - ③ 투입·산출지표가 아닌 결과지표(가급적 정량화된 공식적 수치)로 구성
※ 목표치가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하며,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함
- ⇒ ①~③의 3개 충족시 '상', 2개 충족시 '중', 1~0개 충족시 '하'로 판단

□ 목표치의 적극성(상/중/하) 판단기준

- ① (최근 3년간 상승 추세) 추세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 중
 - ② (최근 3년간 하향 추세)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수준 설정 : 중
 - ③ (최근 3년간 등락 추세)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으로 설정 : 중
※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 : 중
 - ④ (실적치가 전년만 있는 경우) 전년대비 10% 높게 설정 : 중
- ⇒ ①~④의 경우를 목표치의 적극성 '중'의 기준으로 보고, '중' 기준보다 높은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상', 낮은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하'로 판단
- ※ 목표치 초과달성을 위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목표치 달성도를 최대 '일부달성'까지만 인정
- ⑤ (최근 실적치가 없는 경우)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정성적 판단
※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지표에 대한 소관 부서 자료·설명 등을 토대로 판단
 - ⑥ (국제평가지수를 지표로 설정한 경우)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 설정 여부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 판단
- ⇒ ⑤~⑥의 경우 목표치의 적극성을 평가위원이 정성적으로 판단